

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3 - 57호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30일

창원시의회의장 김 이 근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최근 연이은 스토킹범죄가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과의 통합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비밀 유지의 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회사무국 입법예산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jeonhr1@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89
----------	-----

발의연월일 : 2023. 5. 26.

발 의 자 : 오은옥·김상현·김수혜·김우진·문순규·박해정
백승규·서영권·성보빈·안상우·이우완·이찬수
이해련·진형익·최은하·최정훈 의원(16명)

1. 제안이유

○ 최근 연이은 스토킹범죄가 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므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가정폭력·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과
의 통합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비밀 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피해자 및 그 가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
3.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원
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방교육의 실시) 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스토킹행위 또는 제2호의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토킹행위 또는 제2호의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자를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2.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4. 법률구조와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피해자등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5.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운영
 6. 스토킹의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7. 피해자등의 신변노출 방지 및 보호·지원체계 구축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스토킹 신고자 또는 피해자등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과 관련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등을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사기관의 협조) 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은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

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8조에 따른 피해자지원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① 제6조를 위반하여 신고자 또는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에 따른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스토킹행위자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폭력 등을 말한다.

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7. 생략)